

도시관리계획(현안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현안2지구 업무시설용지 합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현안2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따라 결정 고시 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련 도서는 열람장소(하남시청 도시계획과 ☎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22. 3. 2.

하 남 시 장

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나.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
10. 업무시설용지 (변경)

구분	도면번호	가구번호	면 적(m ²)	획지			비고
				번호	위치	면적(m ²)	
기정	계	—	6,140.6	—	—	6,140.6	연접한 획지의 합병 허용
	—	—	2,325.0	업무1	신장동 326-19 일원	2,325.0	
		—	3,815.6	업무2	신장동 370-1 일원	3,815.6	
변경	계	—	6,140.6	—	—	6,140.6	—
	—	—	6,140.6	업무1	신장동 572 일원	6,140.6	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바.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※ 금회 변경되는 사항에 한함